

성범죄자(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)가 일하면 안 되는 곳은 어디인가요?

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

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, 대학, 제주국제학교 등

학원, 교습소, 개인과외교습자

학교교과교습학원, 평생직업교육학원(성인대상 제외) 등

청소년수련시설

청소년수련관, 청소년수련원, 청소년문화의집, 청소년특화시설, 청소년야영장, 유스호스텔 등

체육시설

체육도장(태권도, 유도, 검도, 겸투 등), 수영장, 당구장, 골프장, 체력단련장, 종합체육시설 등(* 무도학원, 무도장 제외)

어린이집

국공립어린이집, 민간어린이집 등

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, 성매매피해상담소

성매매피해자 일반·청소년·외국인지원시설, 그룹홈 등

공동주택관리사무소(경비업무 종사자), 경비업 법인
아파트, 대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관리사무소

청소년활동기획업소

영리목적으로 청소년활동기획·주관·운영하는 사업장 등

장애인 특수교육 관련 기관

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, 특수교육서비스제공 기관 단체 등

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

*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에 따른 "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"



아동·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기억해요!

성범죄가 발생한 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. 자발적으로 했던 성적 행동일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 후회한다면 전문기관에 연락해 도움을 받으세요.

[탁틴내일 - '교사와 앙숙자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수칙' 참고]

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

*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빨리 지원해 피해자의 회복을 돋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
02-735-8994(24시간)

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접수 등 상담, 신체지원 및 유포 현황 모니터링, 수사·법률·의료 연계 지원

여성긴급전화1366
(24시간)

가정폭력·성폭력·성매매·데이트폭력·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긴급구조, 보호 및 상담 등 지원

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
(24시간)

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가출, 학교폭력, 성폭력 및 성매매 등의 위기지원상담

안전Dream 아동·여성·장애인
경찰지원센터 117 (24시간)

여성·학교폭력피해자 ONE-STOP 지원센터 성폭력, 학교·가정폭력, 성매매피해여성 등에게 무료로 24시간 상담·법률·의료·수사 등 지원

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
상담소
02-3141-6191(평일 09시~18시)

아동·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
(상담·법률·의료 등)



여성가족부

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
www.mogef.go.kr

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



여성가족부

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?

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

○ 대상 :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*

○ 내용 : 취업제한기간 중 아동·청소년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금지
(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)

* 성범죄자
-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: '06. 6. 30. 이후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
- 성인 대상 성범죄자 : '10. 4. 15. 이후 성인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

아동·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범죄

아동·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·추행 관련 범죄, 디지털 성범죄, 성매매 범죄 등을 말합니다.

○ 강간, 강제추행, 미성년자 간음·추행,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·추행 등 강간·추행 관련 범죄

○ 아동·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·배포·소지, 카메라 등 이용 촬영, 통신매체 이용음란, 음화반포·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

○ 아동·청소년 성매수, 인신매매, 성매매 유인·권유·강요·알선 등 성매매 범죄

○ 기타 공연음란,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(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)

취업제한 대상자/기간

○ '18. 7. 17. 이후에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자(최대 10년)

○ '18. 7. 17. 이전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(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5·3·1년 차등 적용)

형의 종류	형 확정일		
	'06. 6. 30. ~ '09. 12. 31.	'10. 1. 1. ~ '18. 7. 16.	'18. 7. 17. 이후
3년 초과 징역·금고형	형 확정된 날부터 5년 제한	형 집행이 종료(유예)된 날부터 5년 제한	
3년 이하 징역·금고형	형 확정된 날부터 3년 제한	형 집행이 종료(유예)된 날부터 3년 제한	
벌금형	형 확정된 날부터 1년 제한	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한	법원이 형 선고시 취업제한 명령 선고 (최대 10년)

